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5
----------	------

제출년월일 : 2014.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 가.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무효로 대법원(2012추176, ‘13.5.23)이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 나.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 중 친목도모·복지증진 사업을 삭제함(안 제2조제3호)
- 나.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시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한 심의 절차를 이행함(안 제3조제1항)
- 다.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 보고 등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경비를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u></p> <p>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 4. 생략 <p>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u>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u></p> <p style="padding-left: 2em;">② <u>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u></p> <p>제4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① 동우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 style="padding-left: 2em;">② 동우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동우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5조 (결산보고 등) ① 시장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우회에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em;">② 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u></p> <p>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와 같음) 3. <삭제> 4. (현행과 같음) <p>제3조 (보조금의 지원)----- ----- -----경비를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em;"><삭제></p> <p style="padding-left: 2em;"><삭제></p> <p style="padding-left: 2em;"><삭제></p>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 지방재정법</p> <p>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p>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은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조항에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일반 사회단체와 동일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별도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안전행정국 총무과장 권순명